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춘례 의원 외 7명
- 나. 의안번호: 제1957호
- 다. 발의일자: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2020. 10. 26.

2. 제 안 사 유

-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 요 내 용

- 가.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그린뉴딜에 관해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추진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심상정 의원, 2020.8.4. 발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린뉴딜의 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제3조), 책무(제4조),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제6조), 위원회 운영(제8조~제10조)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시민의 삶의 질 증대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 - 그린뉴딜, 탈탄소사회 등 관련 용어 정의
제3조(그린뉴딜의 기본원칙)	-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책무)	- 그린뉴딜에 관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규정
제6조(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	- 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계획의 내용 규정
제8조~제10조	-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세부적으로 안 제3조는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입법목적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본이념은 목적 규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임을 고려하여 목적과 정의 규정 사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¹⁾, 안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3조의 조 제목은 ‘그린뉴딜의 기본원칙’이나, 각 호의 내용은 그린뉴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별도의 기본이념 조항으로 두지 않고 안 제4조의 책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5조는 그린뉴딜에 관하여 본 조례안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 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녹색성장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 동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린뉴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이에 모호한 영역이 있을 때 어느 조례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안 제6조의 그린뉴딜추진계획과 「녹색성장 조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역시 중복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

-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1) “정의규정의 조 제목은 ‘정의’로 하고,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바로 다음에 둔다. 그러나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기본이념 규정을 두고, 정의규정은 그 다음 제3조에 둔다.”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60)

2)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다른조례와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보다는 ‘그린뉴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감안하여 연임 횟수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현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개념 및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다만, 서울시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로 「녹색성장 조례」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호 조례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